

2001. 10. 20(土)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總務社會委員會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정과

나. 회부일자 : 2001.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1. 10. 15 (제7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지선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으로 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판매인 신고로 변경함에 따른 개정사항임.

4. 주요내용

- 제8조(판매인의 지정)제1항의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시장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 동 조 제2항에서 시장이 직장 새마을금고 등에게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을 삭제하며,
 - 제10조(판매인 지정 신청)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의 제목을 “판매인 신고 등”으로 하는등 조례 전문상에서 “지정” 용어를 “신고”로 수정함.
 - 아울러 조례 제12조에서 증지의 판매를 폐지할 때 “14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5일전”으로, 제15조에서 판매인 승계시 “10일이내” 지정 신청하던 것을 “5일이내”로 기한을 단축시키는 한편,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지정”을 “신고”로 수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개정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법규상 근거없는 일반인의 진입제한을 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도는 위규사항이라 할 수 있어 “신고”로 개정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 조례 제10조에서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로 하고 제14조, 제16조, 제26조 또한 별지 서식 등에서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할 것임.
- 아울러 동 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성립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 행정적 검토

-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는 정부에서도 이미 폐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시행도록한 제도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정 제도를 여전히 존치해 옴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 앞으로는 판매인 신고를 필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증지의 판매 폐지나 판매인 승계 등의 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와의 균형을 감안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